



제한적 목적의 자격증명 신청자를 위한 필수 / 인정되는 신원증명 서류

확인/증명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인정 서류는 (현재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서류여야 하고, 동일한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부문 별로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CSOSA/DOC 서류는 예외)

성명 및 생년월일 한(1) 개 이상의 서류 제출	현재 주소 두(2) 개의 서류 제출	6 개월 거주 두(2) 개의 서류 제출	이름 변경 한(1) 개의 서류 제출
신청자는 아래에 명시된 한(1) 개의 주요 근거 서류 또는 두(2) 개의 보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문서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현재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선택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육(6)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유효한 DC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자신의 여권 또는 영사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양쪽 이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p>주요 근거 서류:</p> <p>만료되지 않은 여권</p> <p>영사 발행 신분증</p> <p>주 통계청(State Office of Vital Statistics)에 제출한 미국 출생 증명서 또는 출생 확인 카드(원본 또는 공인 사본)</p> <p>**CSOSA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또는 DC D 교도부(Department of Corrections)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한 DMV 승인 서류 (ID 카드만 해당)</p> <p>보조 근거 서류:</p> <p>해외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공인 사본)</p> <p>만료되지 않은 해외 운전면허증 또는 ID 카드</p> <p>만료되지 않은 미국 군인 또는 부양가족 ID 카드</p> <p>공인된 학교 기록</p>	<p>공과금 청구서 (수도, 가스, 전기, 기름, 유선방송 요금 청구서)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 (공급 중단 통지/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p> <p>전화요금 청구서 (무선, 유선 또는 호출기 청구서도 가능)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 (공급 중단 통지/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p> <p>등기부등본 또는 매매 비용 정산표(Settlement Statement) - 지난 60일 이내에 발급</p> <p>아직 만료되지 않은 리스 또는 임차 계약서 - 신청자의 이름이 임차인, 승인된 거주자 또는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사본도 가능)</p> <p>만료되지 않은 전대(Sublease) 내역서 - 미만료 원래 임대 내역서를 첨부하고 증명자의 이름이 전대인(sub-lessor)으로 명시되어야 함</p> <p>지난 12개월 내에 발급된 DC 재산세 청구서</p> <p>만료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보험 증서 -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p> <p>**이름과 DC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CSOSA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또는 DC 교도부(DC Department of Corrections, DC DOC)가 발급한 사진 부착 서류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ID 카드만 해당)</p> <p>**거주지에 거주하는 부모/보호자가 서명한 21세 미만의 거주자용 DC DMV 거주 증명서, 부모/보호자의 미만료 DC 운전 면허증 또는 DC 신분증 사본, 그리고 부모/보호자의 명의로 된 거주 증명서 2부 (예: 공과금 청구서, 전화요금 청구서 등)</p> <p>**오페어(Au Pair)를 위한 DC DMV 거주 증명서</p> <p>은행/신용카드/투자계정 명세서 - 최근 60일 이내에 발급</p> <p>관공서 우편물 - 정부 당국에서 받은 우편물(성명과 주소 명시)로서 내용물과 봉투가 포함되고 지난 60일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DC DMV에서 받은 우편물은 제외 (우체국에서 보낸 주소 변경 통지서는 인정하지 않음)</p> <p>**공인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DC DMV 승인 양식 (ID 카드만 해당)</p> <p>지난 60일 내에 발급된 의료비 청구서</p> <p>최근 60일 내에 발급된 학생 대출금 명세서</p> <p>지난 60일 내에 발급된 주택 지분 대출 명세서</p> <p>차량/개인 대출금 명세서(쿠폰복이나 바우처는 인정하지 않음) - 지난 60일 내에 발급</p> <p>지난 60일 내에 발급된 주택 경비 시스템 요금 청구서</p>	<p>공과금 청구서 (수도, 가스, 전기, 기름, 유선방송 요금 청구서) (공급 중단 통지/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p> <p>전화요금 청구서 (무선, 유선 또는 호출기 청구서도 가능, 공급 중단 통지/청구서는 인정하지 않음)</p> <p>등기부등본, 모기지 또는 매매 비용 정산표</p> <p>아직 만료되지 않은 리스 또는 임차 계약서 - 증명자의 이름이 임대인, 임차인, 승인된 거주자 또는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사본도 가능)</p> <p>만료되지 않은 전대(Sublease) 내역서 - 미만료 원래 임대 내역서를 첨부하고 증명자의 이름이 전대인(sub-lessor)으로 명시되어야 함</p> <p>DC 부동산 세금 청구서</p> <p>만료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보험 증서 - 이름과 주소 명시</p> <p>**거주지에 거주하는 부모/보호자가 서명한 21세 미만의 거주자용 DC DMV 거주 증명서, 부모/보호자의 미만료 DC 운전 면허증 또는 DC 신분증 사본, 그리고 부모/보호자의 명의로 된 거주 증명서 2부 (예: 공과금 청구서, 전화요금 청구서 등)</p> <p>**오페어(Au Pair)를 위한 DC DMV 거주 증명서</p> <p>은행/신용카드/투자계정 명세서</p> <p>관공서 우편물 - 정부 당국에서 받은 우편물(성명과 주소 명시)로서 내용물과 봉투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DC DMV에서 받은 우편물은 제외 (우체국에서 보낸 주소 변경 통지서는 인정하지 않음)</p> <p>**공인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발급한 DC DMV 승인 양식 (ID 카드만 해당)</p> <p>의료비 청구서</p> <p>학생 대출금 명세서</p> <p>주택 지분 대출 명세서</p> <p>차량/개인 대출금 명세서(쿠폰복이나 바우처는 인정하지 않음)</p> <p>주택 경비 시스템 요금 청구서</p>	<p>공인 결혼 증명서</p> <p>이혼 판결문</p> <p>미국 법원의 이름 변경에 관한 공식 명령서</p>
<p>**보조 거주 근거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p>			